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안

의 번 호	455
-------------	-----

제안년월일 : 2001. 9.
제안자 : 산업경제위원장

□ 제안이유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여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생산자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우수 농특산물의 생산자에게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농특산물의 품목,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절차, 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 상표의 사용권 부여 및 취소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표관리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인 농정국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안 제5조)
- 품질과 관련하여 상품의 변상, 반납 등 불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상표사용을 즉시 정지시켜야 함 (안 제7조 제2항)

-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취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음
(안 제8조 제1항)
- 상표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사후관리의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 및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안 제9조 제1항)
- 상표사용품목에 대하여 국내 전시판매의 우선권 부여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필요한 경우 홍보비를 지원할 수 있음
(안 제9조 제4항)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수정 요구 사항

조례안	수정 요구 사항
제2조 제2호중 농특산물의 심볼 마크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u>규칙으로</u> 정한다.	조례안중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현재 운영중인 예규(충청북도지사우수농특산품추천제운영지침. 98. 3. 31 제정)를 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를 요구함
제3조중 농특산물의 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칙으로 → 별도로 <p>* 규칙뿐만 아니라 훈령 또는 예규로 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p>
제4조 제2항중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절차, 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u>규칙으로</u> 정한다.	
제5조 제4항중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규칙으로</u> 정한다.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내에서 우수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자에게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한 상품에 대하여 충청북도농특산물공동상표(이하 "상표"라 한다)의 사용권을 부여하여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특산물"이라 함은 충청북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2. "상표"라 함은 도지사가 추천한 농특산물의 심볼마크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사용대상품목)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농특산물의 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사용신청 및 절차 등) ①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절차, 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상표관리심의위원회) ①상표의 사용권부여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농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농특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사용권의 부여) 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 (상표사용의 정지) ①상표사용자는 농특산물의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품질과 관련하여 상품의 변상, 반납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상표사용을 즉시 정지시켜야 한다.

제8조 (사용권의 취소) ①도지사는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표의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2. 전업 또는 폐업 등으로 상표의 사용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3. 상표사용의 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4. 사용권을 부여받지 않은 품목을 혼합하여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5. 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정 또는 보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을 취소 당한 자는 취소 당한 날부터 3년이내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 ③제7조에 의한 상표사용의 정지 및 동조에 의한 취소를 하였을 경우 관할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권 부여품목의 사후관리) ①도지사는 상표사용품목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사후관리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상표사용자 및 부여품목에 대한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등에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상표사용품목에 대하여 국내외 전시판매의 우선권 부여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필요한 경우 홍보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제9조제3항의 규정은 도지사가 상표를 상표법에 의하여 상표권을 얻은 날부터 적용한다.